

#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·강화됩니다

(2020년 3월 13일 시행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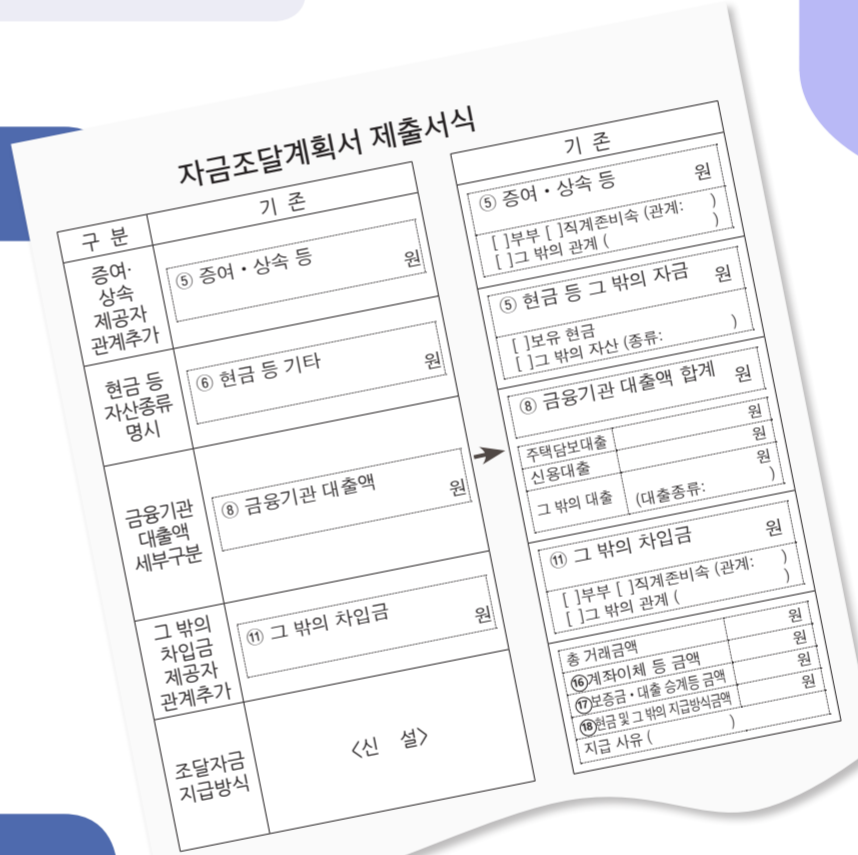
##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됩니다.

현행	변경
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	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주택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

※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.

##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서식이 변경됩니다.

- 증여·상속 또는 그밖의 차입금 항목 기재 시 **자금제공자** 기재
-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 기재 시 **자산의 종류** 기재
-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 기재 시 **대출 종류** 기재
- 매도인에게 **조달한 자금 지급방식** 기재



## 자금조달 증빙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.

투기과열지구 **9억 초과 주택** 거래계약 체결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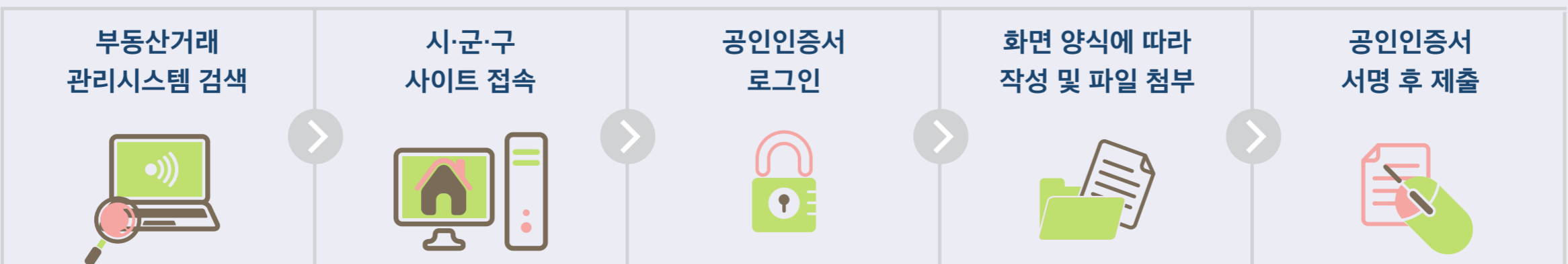
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	제출 증빙 서류
금융기관 예금액	예금잔액증명서 등
주식·채권 매각대금	주식거래내역서, 예금잔액증명서 등
증여·상속	증여·상속세 신고서, 납세증명서 등
현금 등 그 밖의 자금	소득금액증명원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
부동산 처분대금 등	부동산매매계약서,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
금융기관 대출액	금융거래확인서, 부채증명서,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
임대보증금	부동산임대차계약서
회사지원금·사채	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그 밖의 차입금	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※ 제출시점에 항목 별 금액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



##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**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**에 접속하여 자금조달계획서는 물론 증빙서류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

※ 방문제출도 가능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